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당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국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우리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4년 02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4월 0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4.02.29)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펀드코드: 59370]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당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국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당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국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6600**	0.9600	1.3700	1.6700	270	445	627	1,009	2,0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C1)	없음	**2.2000**	1.5000	1.5700	2.2100	224	455	692	1,186	2,54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1800**	0.4800	1.0100	1.1900	171	297	428	706	1,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6800**	0.9800	1.1800	1.6890	172	349	533	919	2,002
수수료미징구-퇴직연금(P1)	없음	**1.4500**	0.7500	-	1.4570	148	302	461	797	1,749
수수료미징구-개인연금(P2)	없음	**1.5200**	0.8200	-	1.5300	156	317	484	835	1,8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Pe1	없음	**1.1000**	0.4000	-	1.1070	113	230	352	611	1,3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Pe2	없음	**1.1500**	0.4500	-	1.1570	118	241	368	638	1,41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펀드보수 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4)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4년 01월 31일(국내주식)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3.03.01~2024.02.29	최근 2년(%) 2022.03.01~2024.02.29	최근 3년(%) 2021.03.01~2024.02.29	최근 5년(%) 2019.03.01~2024.02.29	설정일 이후
운용	2006-08-18	10.27	-1.24	-4.11	7.56	8.21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3.82
변동성		14.46	17.07	16.68	20.67	18.89

주1) 비교지수: KOSPI Inde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의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범	1978	책임 (팀장)	14	2,076	13.41	1.01	11.35	-0.51	13년
박성진	1991	책임 (대리)	2	420	9.38	-			4년 11개월
유동옥	1983	부책임 (차장)	21	4,383	13.20	1.57			9년 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위험	지배구조를 포함한 가치할인요소에 따라 시장가치가 기업의 잠재가치에 비교하여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며, 기업가치 할인요소의 축소와 그 기간의 단축을 통한 해당기업의 시장평가 제고와 중장기적인 초과수익의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목표의 달성여부는 투자전략의 성공적인 수행 및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으며, 투자목적의 달성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동일한 투자목적 하에 복수의 펀드 (공사모 펀드) 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동 운용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의 환매는 투자전략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table>
<tr><td></td><td colspan="3">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방법</td><td>-오후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15시30분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오후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15시30분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d colspan="2"></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u>-산정방법</u>: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u>-공시장소</u>: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td></tr>
<tr><td>과세</td><td colspan="3">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우리자산운용㈜ (☏ 02-2118-0500)</td></tr>
<tr><td>모집[판매]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4년 04월 05일</td><td>존속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u>Class (종류)</u></th><th><u>집합투자기구의 특징</u></th></tr>
<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A
(수수료선취)</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C (수수료미징구)</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판매경로</td><td>E
(온라인)</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 (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CDSC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I (고액)	납입금액이 50억 이상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G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 (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F (기관)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W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P1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P2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am.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a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	59370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59368
Ae (수수료선취-온라인형)	D9447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59369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49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50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51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52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	9363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랩)	93633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기관)	9363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77177
C(H)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주택마련)	93635
P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AE179
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D9449
Pe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D9450
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D9451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무권유자비용)	BP45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Q955
S(P)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D9452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D945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 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장소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	59370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59368
Ae (수수료선취-온라인형)	D9447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59369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49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50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51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95852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	9363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랩)	93633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기관)	9363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77177
C(H)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주택마련)	93635
P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AE179
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D9449
Pe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D9450
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D9451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무권유자비용)	BP45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Q955
S(P)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D9452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D945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06.08.18	최초설정
2006.09	환매수수료율 및 징수기간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2007.05	환매수수료 징수기간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2007.11	클래스 신설
2008.08	투자설명서 갱신
2008.10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Class C(H) 가입자격 변경
2008.10	장기 적립식 고객 세제 혜택 추가에 따른 약관 변경
2009.05	- 집합투자규약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 주식투자신탁 G-1호 → 알리안츠 기업가치 향상 장기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06	투자신탁 운용 전략 구체화를 위한 투자설명서 정정
2009.10	- 이익 분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 경과에 따라 재무제표 등 기재사항 반영 - 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 정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업데이트 - 투자 전략 위험 고지 추가
2010.3.23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및 이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알리안츠 기업가치 향상 장기 증권 투자신탁[주식] →알리안츠 기업가치 향상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등 반영 - 투자 가능 채권 등급(BBB- →A-), 어음 등급(A3- → A2-) 변경 - Class C(H) 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2010.5.26	- Class C 판매보수 인하(1.995%->1.5%) - Class C(H) 판매보수 인하(1.895%->1.4%) - Class CI 판매보수 인하(1.795%->1.2%)
2010.8.16	- 책임운용인력변경(김정우 →김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제93조 및 제223조)
2010.10.18	- Class C 명칭 변경(Class C → Class C1) - CDSC 적용으로 인해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추가 - 판매보수 인하[Class A(1.195%→1.08%→0.96%)/ Class E (1.200%→1.090% → 0.980%) / Class C(H) (1.400%→ 1.200%→1.00%→0.800%)] - Class A 환매수수료 변경(90일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0.12.17	- 다른 자투자신탁(알리안츠퇴직연금기업가치향상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추가
2011.12.20	- Class I 및 Class C(F)의 가입 자격 변경 - 제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2.11.23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자본시장법 (2012.06.29), 자본시장법시행령(2011.11.05)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부책임운용 추가) - 퇴직연금 클래스인 C(P) 클래스 추가
2013.09.27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2013.8.29 시행) 개정사항 반영
2014.04.01	- 수익증권 신설 (클래스 S 수익증권)
2014.07.01	- 운용보수 인하 (0.855% → 0.65%) - 공동 책임운용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따른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추가(하종혁)
2014.12.12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5.07.31	- 책임운용인력 변경 (김한/하종혁 → 하종혁) - 투자대상 자산 추가(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2015.12.10	- 환매수수료 조항 삭제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16.07.30	-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15시 →15시 30분)
2016.09.21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7.04.29	- 수익증권 신설 (Class C(G) 수익증권)
2017.06.30	-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이승엽 → 박상욱)
2017.09.05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7.12.26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 알리안츠 기업가치향상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ABL 기업가치향상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www.allianzgi.co.kr→ www.ablgam.com
2018.09.07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투자위험등급의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정기 갱신
2019.09.10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투자위험등급의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정기 갱신
2019.09.25	- 간이투자설명서 개정
2019.12.06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 ABL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우리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www.ablgam.com → www.wooriglobalam.com
2020.08.14	- 종류 Ae, Pe1, P2, Pe2, S(P)1, S(P)2 수익증권 신설 - 수익증권 표기 변경 : 종류 C(P) 수익증권 → 종류 P1 수익증권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하종혁→정혜승)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상욱→김택주)
2020.09.08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하나펀드서비스→우리펀드서비스)
2020.10.15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3등급→2등급)
2021.06.11	- 비교지수 변경 : KOSPI Index 90% + Call 10% → KOSPI Index 100%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기재)
2021.09.07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22.05.20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 '21.10.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문구 반영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 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업데이트
2022.09.01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23.09.06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채권평가회사 사명변경 (NICE채권평가 → NICE피앤아이)
2024.01.12	- ESG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4.01.30	- 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펀드명칭, 운용전문인력 등 변경
2024.04.05	펀드명칭 변경(우리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역 변경,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작성기준일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범	1978	팀장	14	2,076	13.41	1.01	11.35	-0.51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3 년			2010.08 – 2015.05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 2015.05 – 2018.03 알펜루트자산운용 주식운용 2018.08 – 2019.12 파레토자산운용 주식운용 2019.12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성진	1991	대리	2	420	9.38	-	11.35	-0.51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4 년 11 개월			2019.01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동옥	1983	차장	21	4,383	13.20	1.57	11.35	-0.51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9년 1개월			2009.12 ~ 2012.09 윈베스트투자자문 리서치 2013.01 ~ 2014.11 헥서스투자자문 리서치 2014.12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김재범	1978	팀장	14	2,076	13.41	1.01	11.35	-0.51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3 년			2010.08 – 2015.05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 2015.05 – 2018.03 알펜루트자산운용 주식운용 2018.08 – 2019.12 파레토자산운용 주식운용 2019.12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성진	1991	대리	2	420	9.38	-	11.35	-0.51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4 년 11 개월			2019.01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유동옥	1983	차장	19	3,673	21.89	-0.68	23.83	-5.00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8년 11개월			2009.12 ~ 2012.09 윈베스트투자자문 리서치 2013.01 ~ 2014.11 헥서스투자자문 리서치 2014.12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운용했던 ESG 집합투자기구

성명	운용이력
김재범	2019.12 - 현 재 지속가능ESG펀드 운용 2021.03 - 현 재 연기금 책임투자펀드 운용 2022.01 - 현 재 AI ESG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박성진	해당사항 없음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운용했던 ESG 집합투자기구

성명	운용이력

유동옥	2021.03 – 2023.08 연기금 책임투자펀드 운용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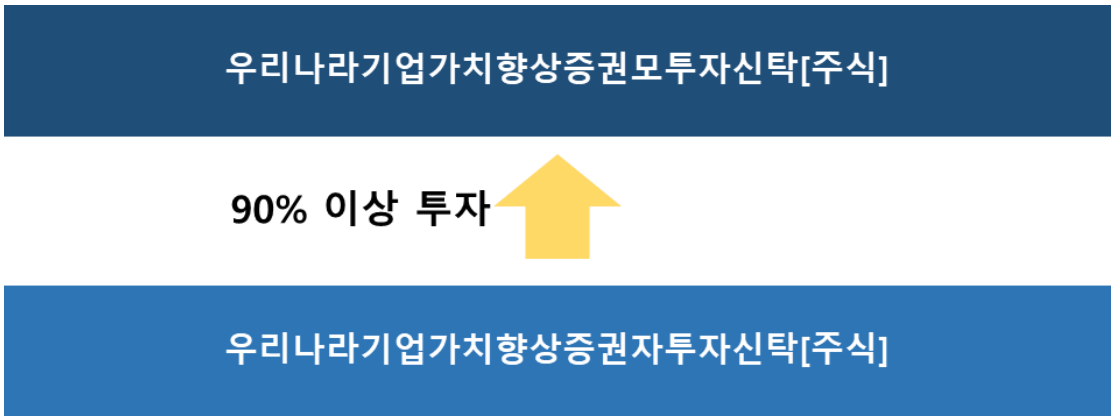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정혜승	2020.08.14 ~ 2024.01.29
김재범	2024.01.30 ~ 2024.04.04
김재범, 박성진	2024.04.05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택주	2020.08.14 ~ 2022.05.19
유동옥	2024.01.30 ~ 현재

주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Class)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집합투 자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 무관리
A	2006.08.18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이내	없음	없음	0.650	0.960	0.035	0.015

Ae	2020.11.27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	납입금액의 0.5%이내	없음	없음	0.650	0.480	0.035	0.015
C1	2006.08.18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1.500	0.035	0.015
C2	2010.10.18	Class C1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1.375	0.035	0.015
C3	2010.10.18	Class C2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1.250	0.035	0.015
C4	2010.10.18	Class C3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1.125	0.035	0.015
C5	2010.10.18	Class C4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1.000	0.035	0.015
C(E)	2007.12.14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 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 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0.980	0.035	0.015
I	-	납입금액이 50억 이상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0.050	0.035	0.015
C(W)	2009.08.14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0.000	0.035	0.015
C(H)	-	투자자의 자격을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 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0.800	0.035	0.015
C(F)	-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기구 나. 특정금전신탁 다.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에 의한 전문투자자(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 라.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없음	없음	없음	0.650	0.050	0.035	0.015

		개인 또는 500 억 이상인 법인							
P1	2020.12.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0.750	0.035	0.015
Pe1	2020.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0.40	0.035	0.015
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0.82	0.035	0.015
Pe2	2020.11.27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0.45	0.035	0.015
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0.700	0.035	0.015
S	2014.04.2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없음	3년이내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0.650	0.350	0.035	0.015
S(P)1	2020.08.2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없음	없음	0.650	0.24	0.035	0.015
S(P)2	2020.08.25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없음	없음	없음	0.650	0.25	0.035	0.015

		자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3) 보수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 국내주식 60% 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60% 이상) -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Bottom-up 분석, 적극적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당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국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②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ESG)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조정 수익률을 개선하여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한도 / 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양도성 예금증서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③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ESG 관련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재산 중 주식편입 비중의 80% 이상을 ESG투자전략을 적용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 "ESG투자 전략"을 적용함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이하 'ESG')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과 "지속가능성 관련 테마(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녹색기술 등) 관련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①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주식**	**60%이상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 9 조제 13 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총액의 60% 이상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신용 평가 등급이 A3-이상인 것)
③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⑤장내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법 제8조2 제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⑥수익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⑦투자증권대여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환매조건부채권매도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⑨증권의차입		①내지 ④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ESG 관련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재산 중 주식편입 비중의 80% 이상을 ESG투자전략을 적용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 "ESG투자 전략"을 적용함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이하 'ESG')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과 "지속가능성 관련 테마(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녹색기술 등) 관련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까지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부터 ⑨까지 및 아래의 투자제한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투자제한 ⑦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ETF 해당)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해당)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⑥까지 및, ⑨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부터 ⑨까지 및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⑦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함	
③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④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명목계약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⑤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 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 86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 86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⑧후순위채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자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Index 100% 입니다.

※ KOSPI 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 됨.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
즉, 종합주가지수=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KOSPI 지수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단,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펀드운용계획**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top-down(macro)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bottom-up(fundamental) 분석에 입각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펀드 운용 전략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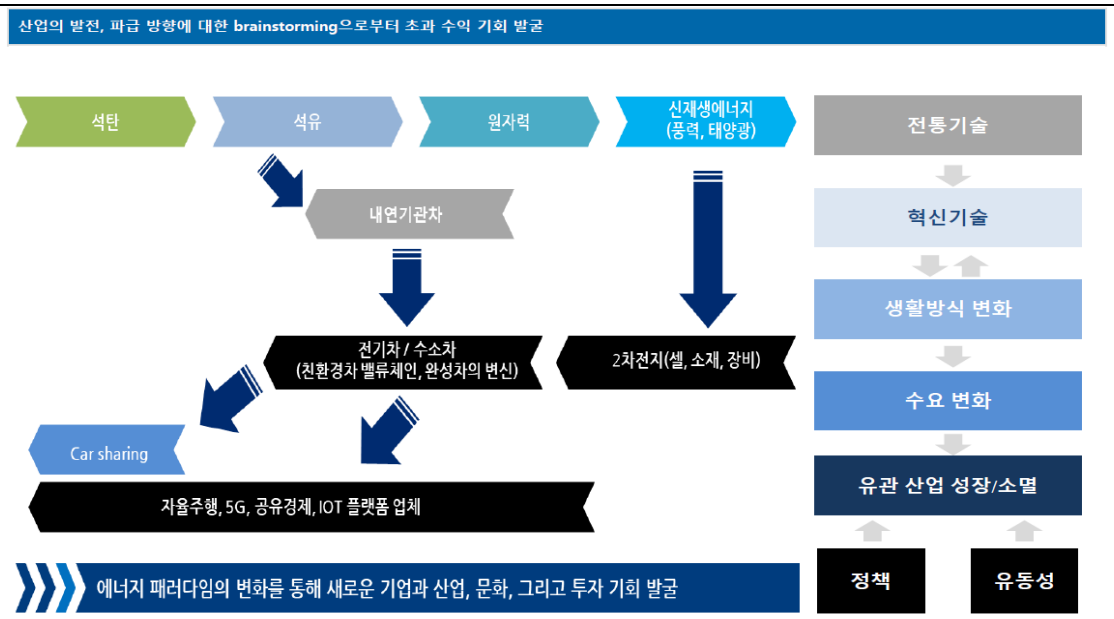
✧ **투자전략**

➢ **가치주, 성장주 등에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

- Top-dow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Bottom-up 리서치
- 가치/성장, 대형/중소형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 기회를 발굴

➢ **환경 관련 산업에서의 장기적 투자 기회 발굴**

-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서 투자 기회 포착



➢ **주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주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 창출
- 기업 가치 상승이 주주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 **투자프로세스**

Screening System 등을 활용한 1차 종목 선정	매년 1,000회 이상의 기업 방문 및 미팅, 국내외 20여개 증권사 리서치 활용, 퀀트 스크린 &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통한 1차 분석 대상 종목선별, 섹터담당 애널리스트 / 매니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기본적 분석 : 기업탐방을 통한 기업 및 산업 분석	탐방보고서 : SWOT분석, 산업전망, 기업수익 전망, 사업전략, 컨센서스 비교분석 기업에 대한 장기 보고서 : 사업전략, 경영진 평가, 비교기업 분석, 이익성장 방향성 및 추세, 주주가치 증대 노력 여부 등
투자 유니버스 조정 및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모든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며 MP 외의 종목이라도 유니버스 내의 종목은 매니저 재량으로 편입 가능. 기업의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 펀더먼털 변화, 가격 메리트 여부, 더 좋은 재 진입 기회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매수/매도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기업의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 펀더먼털 변화, 가격 메리트 여부, 더 좋은 재 진입 기회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매수/매도
포트폴리오 점검 및 성과 분석	운용관련 모든 인력이 참석하는 모닝미팅을 통해 포트폴리오 및 유니버스 내 기업에 대한 분석정보 공유, 시장환경 점검. 매월 정기적인 성과분석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동성, 베타, 주식비중, 회전율 등 체크

※투자대상 분석 및 시장환경 점검 시, ESG평가를 반영하고 ESG모니터링상 중요 이슈 발생시 논의 및 점검

- 평가에 고려하는 ESG 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리더십과 거버넌스	리더십과 거버넌스	이사회 리더십
위험관리	비재무 위험관리	주주권 보호
운영 및 성과	운영 및 성과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소통	주주 및 이해관계자 소통

출처: 한국ESG기준원

- 평가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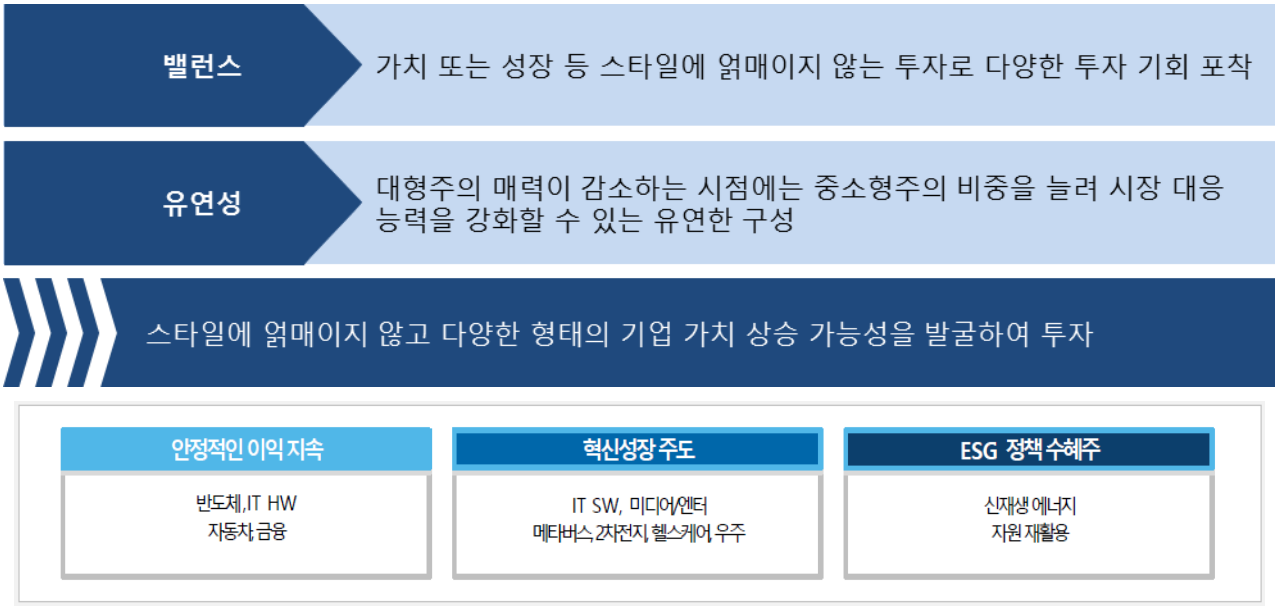
① 외부 ESG평가등급 활용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등급을 활용하여 투자대상 종목군 내 개별 기업의 비재무적 수준을 점검

② 내부 ESG리서치 활용

- (ESG 모멘텀) 회사의 자체노력으로 ESG 개선이 기대되거나 주주관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여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ex. ESG정보 공시 개선, ESG경영 강화 기조, 지배구조/주주환원 정책 개선 등의 변화가 관찰되는 기업 등)
- (ESG Mega Trend) 규제/정책/소비패턴 등 ESG의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ex. 기존사업 또는 신사업에서 탄소배출/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ESG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개발하여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편입/편출여부 최종 결정

✧ 포트폴리오의 특징 : 밸런스 & 유연성



[외부리서치 활용현황]

- 주요 외부리서치 기관 : 한국ESG기준원

기업의 ESG정보 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ESG리서치 전문인력을 보유한 ESG평가기관으로, 당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장기업 ESG 정기 평가결과 및 ESG분석 보고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비재무적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야	내 용
외부증권사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증권사 View	• 월간 핵심 Buy List 지원 • 기획 탐방 지원 / 당사 요구 Quants 지원
	업 종	• 업종 Cycle 분석
	종 목	• 철저한 Bottom-up에 따른 펀더멘털 분석

구분	분야	내 용
국내 ESG 평가기관	ESG 평가등급 및 컨트로버시 이슈	• ESG 평가등급 제공 • 컨트로버시 이슈 alert, 분석보고서 지원
	ESG 관련 정책, 연구결과	• ESG 관련 산업동향, 정책변화, 연구결과 지원
	의결권행사 지원 등	• 의안분석보고서, 주주관여활동 지원
데이터 서비스	Bloomberg 등	• 해외 평가기관 등급 • 해외 ESG 동향, , ESG factor 성과분석 등

* 이외에 정책변화 및 외부기관 등 경계없는 다양한 리서치 자료 활용

[ESG 리서치 업무 관련 전담 조직]

ESG투자전략실 : ESG투자 전담조직인 'ESG투자전략실'을 마련하여 투자대상기업의 ESG분석부터 주주활동 및 공시까지 ESG 투자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투자전략실' 내 ESG리서치팀은 ESG 전문인력과 Credit Analyst로 구성되어 각 운용본부의 ESG투자를 지원하며, ESG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1) 리스크관리의 원칙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
-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함

(2) 리스크관리 정책

- 운용자산관련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
- 투자의사결정과 병행하여 펀드의 시장 / 신용 /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당사의 사무수탁회사인 우리펀드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구축
-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리스크 관리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Daily Monitoring 및 Monthly Risk Reporting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으로서, 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주식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ESG투자 고려비중

이 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하므로, 재무적 요소와 ESG 요소 간 고려 비중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주주활동의 목표, 계획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주활동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투자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주주활동을 병행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

	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 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해외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변동보다 더 큰 손익을 가져오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수익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위험	지배구조를 포함한 가치할인요소에 따라 시장가치가 기업의 잠재가치에 비교하여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며, 기업가치 할인요소의 축소와 그 기간의 단축을 통한 해당기업의 시장평가 제고와 중장기적인 초과수익의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목표의 달성여부는 투자전략의 성공적인 수행 및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으며, 투자목적의 달성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동일한 투자목적 하에 복수의 펀드 (공사모 펀드) 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동 운용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의 환매는 투자전략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및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

	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의무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의무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프로세스 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업 분석 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 등의 비재무적 이슈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 선별 등을 수

	행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투자전략 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SG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위험	외부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보의 완벽한 정확성,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 리서치 결과 등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의 기준 변경이나 투자기업의 중대한 컨트로버시 이슈 발생 등으로 ESG평가결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하위 등급의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2부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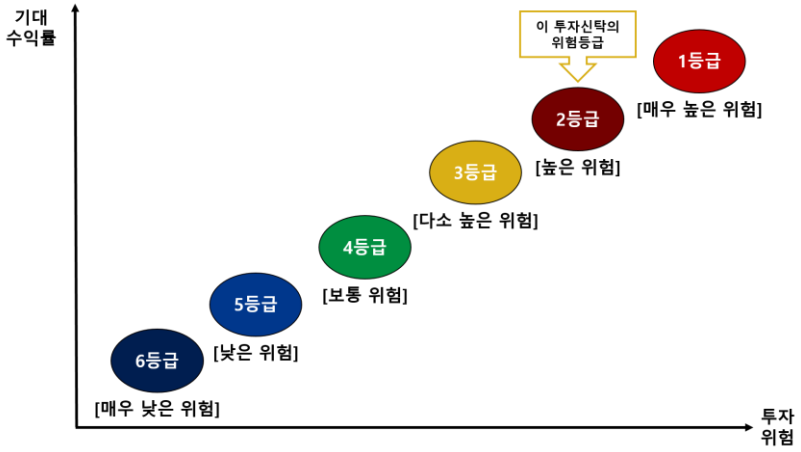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 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수익자, 기존 수익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및 해외 관련 국가들의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 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

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특히, 주식의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7.57%**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0%초과 15%이하
2020.10.15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5%초과 25%이하

<우리자산운용 자체 위험분류 기준>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구 분	수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경우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말하며,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부동산, 특별자산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수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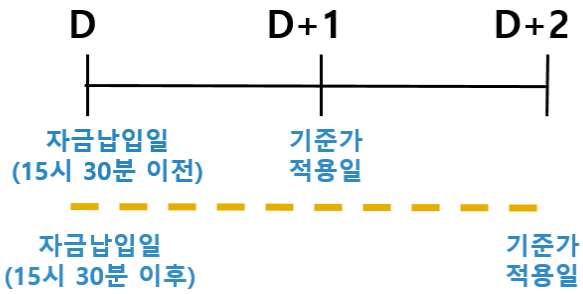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Ae (수수료선취-온라인형)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
Class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Class C1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Class C2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Class C3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	Class C4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	납입금액이 50억 이상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랩)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F)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기관)	가. 집합투자기구 나. 특정금전신탁 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 라.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 이상인 법인
Class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H)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주택마련)	투자자의 자격을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 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Class Pe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자
Class 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자
Class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무권유자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Class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P)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Class S(P)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내에서 청약이 권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1933년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정 S의 규칙 902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로 이전될 수도 없으며 또한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자들은 가입신청자들 본인이 미국인이 아님을 선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자들은 미국인의 계좌를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의 계좌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인들에게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도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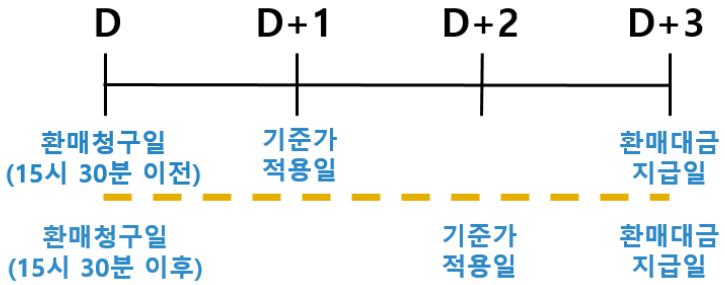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기존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2010년 10월 18일에 Class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 총보유기간에 따라 Class C2부터 Class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Class 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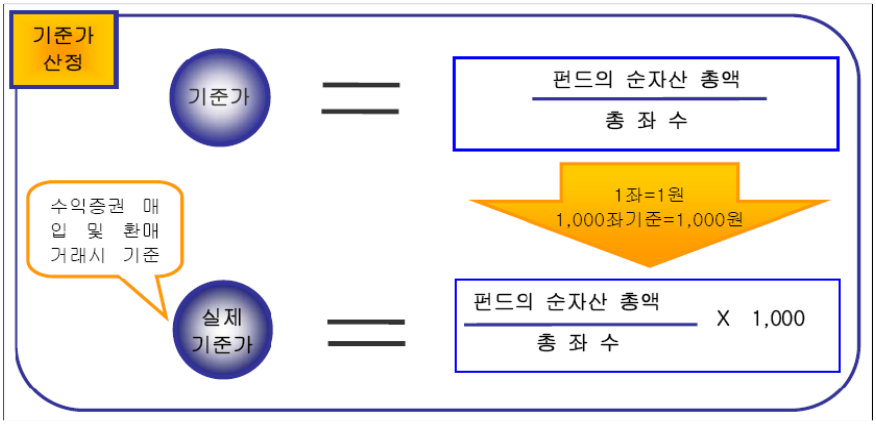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매 영업일 평가시점 현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 평

	가시점 현재 기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되며 그 산정 결과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적용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A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C1 수익증권,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I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H) 수익증권, Class P1 수익증권 Class P2 수익증권 Class Pe1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Pe2 수익증권 , Class S(P)1 수익증권 Class S(P)2 수익증권 Class C(G)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 부과합니다. 다만, 후취판매수수료는 이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A	A(E)	C1	C(E)	C2	C3	C4	C5	I	C(W)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최초설정일 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0.9600	0.4800	1.5000	0.9800	1.3750	1.2500	1.1250	1.0000	0.0500	0.0000	
신탁업자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일반사무관리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보수합계	1.6600	1.1800	2.2000	1.6800	2.0750	1.9500	1.8250	1.7000	0.7500	0.7000	
기타비용	0.0080	0.0080	0.0080	0.0080	0.0080	0.0060	0.0050	0.0080	0.0080	0.0080	발생 시
총보수 ·비용	1.6680	1.1880	2.2080	1.6870	2.0830	1.9560	1.8300	1.7080	0.7580	0.7080	발생 시
동종유형 총보수	1.3700	1.0100	1.5700	1.1800	1.5700	1.5700	1.5700	1.5700	-	-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6700	1.1900	2.2100	1.6890	2.0850	1.9580	1.8320	1.7100	0.7600	0.7100	발생 시
증권거래비용	0.4900	0.4940	0.4480	0.4920	0.4110	0.5430	0.4720	0.4860	0.4900	0.4900	발생 시

구분 (Class)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C(F)	C(H)	C(G)	P1	P2	Pe1	Pe2	S	S(P)1	S(P)2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0.650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0.0500	0.8000	0.7000	0.7500	0.8200	0.4000	0.4500	0.3500	0.2400	0.2500	
신탁업자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0.0350	
일반사무관리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보수합계	0.7500	1.5000	1.4000	1.4500	1.5200	1.1000	1.1500	1.0500	0.9400	0.9500	
기타비용	0.0080	0.0080	0.0080	0.0050	0.008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발생 시
총보수 ·비용	0.7580	1.5080	1.4080	1.4550	1.5280	1.1050	1.1550	1.0550	0.9450	0.9550	발생 시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0.7600	1.5100	1.4100	1.4570	1.5300	1.1070	1.1570	1.0570	0.9470	0.9570	
증권거래비용	0.4900	0.4900	0.4900	0.4750	0.4900	0.5100	0.4360	0.4970	0.4860	0.4860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년도(2022.8.18~2023.8.17)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되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Class A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회계기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이 설정전으로 발생한 비용은 없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2022.8.18~2023.8.17)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되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Class A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주5) 종류별(Class A와 Class C1)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 2024년01월31일 (국내주식형)

주8)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주9) 제3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 비용을 지급하나, 그 비용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174,581
발행분담금	0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종류	투자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270	445	626	1,008	2,080
	합성 총보수•비용	270	445	627	1,009	2,082
Class Ae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71	297	428	704	1,496
	합성 총보수•비용	171	297	428	706	1,499
Class C1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224	454	691	1,185	2,547
	합성 총보수•비용	224	455	692	1,186	2,549
Class C2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211	429	653	1,121	2,419
	합성 총보수•비용	212	429	654	1,122	2,421
Class C3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99	403	614	1,056	2,287
	합성 총보수•비용	199	404	615	1,057	2,289
Class C4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86	378	576	992	2,153
	합성 총보수•비용	186	378	577	993	2,156
Class C5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74	353	539	928	2,023
	합성 총보수•비용	174	354	539	929	2,025
Class I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77	158	243	422	944
	합성 총보수•비용	78	159	243	423	947
Class C(W)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72	148	227	395	884
	합성 총보수•비용	73	148	227	396	887
Class C(F)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77	158	243	422	944

	합성 총보수•비용	78	159	243	423	947
Class C(E)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72	349	532	917	2,000
	합성 총보수•비용	172	349	533	919	2,002
Class C(H)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53	312	477	824	1,805
	합성 총보수•비용	154	313	478	825	1,807
Class P1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48	302	461	796	1,746
	합성 총보수•비용	148	302	461	797	1,749
Class P2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55	316	483	834	1,827
	합성 총보수•비용	156	317	484	835	1,829
Class Pe1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13	230	352	610	1,351
	합성 총보수•비용	113	230	352	611	1,353
Class Pe2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18	240	367	637	1,409
	합성 총보수•비용	118	241	368	638	1,411
Class C(G)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43	292	446	771	1,694
	합성 총보수•비용	144	292	447	772	1,696
Class S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08	220	336	583	1,293
	합성 총보수•비용	108	220	337	584	1,296
Class S(P)1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96	197	301	524	1,165
	합성 총보수•비용	97	197	302	525	1,168
Class S(P)2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97	199	305	529	1,177
	합성 총보수•비용	98	199	305	530	1,179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1, C2, C3, C4, C5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Class S는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Class C(H)<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이익분배금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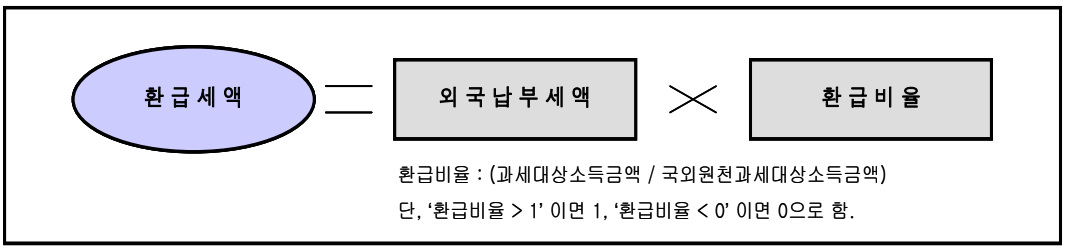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 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적립식 가입의 경우 세제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 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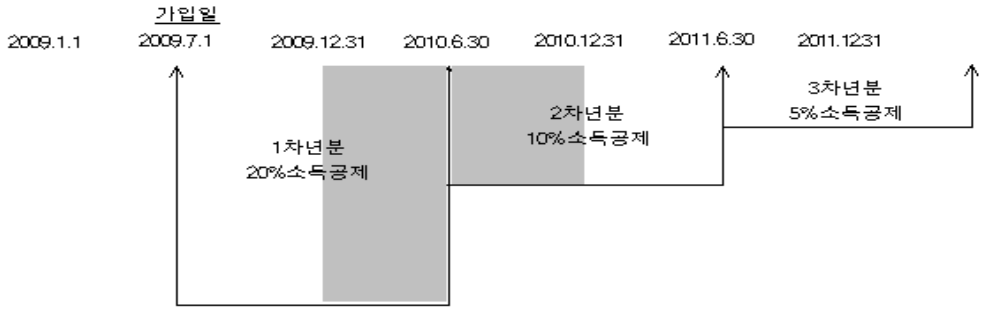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5) Class C(H)<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투자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기간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
계약기간	7년 이상 (당해 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혜택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7년 이상 가입시)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름
감면세액 추징	-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함 -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공제	- 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세액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4(저축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을 추징. 다만, 저축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세법의 변경 및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따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감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8기 (2023.08.18 ~ 2024.02.17)	-	회계기간 미경과
제17기 (2022.08.18 ~ 2023.08.17)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16기 (2021.08.18 ~ 2022.08.17)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8기 (2024.02.17)	제17기 (2023.08.17)	제16기 (2022.08.17)
운용자산	34,947,588,406.	35,096,664,838.	37,861,244,176.
증권	34,590,779,957.	34,736,983,523.	37,494,851,90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56,808,449.	359,681,315.	366,392,27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9,561,692.	201,162,634.	155,231,910.
자산총계	34,977,150,098.	35,297,827,472.	38,016,476,08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9,064,800.	54,029,047.	3,922,950.
부채총계	29,064,800.	54,029,047.	3,922,950.
원본	40,396,584,173.	42,101,618,832.	46,154,714,674.
수익조정금	-9,557,522.	-768,502.	220,775,628.
이익잉여금	-5,438,941,353.	-6,857,051,905.	-8,362,937,166.
자본총계	34,948,085,298.	35,243,798,425.	38,012,553,136.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18기 (2023.08.18 ~ 2024.02.17)	제17기 (2022.08.18 ~ 2023.08.17)	제16기 (2021.08.18 ~ 2022.08.17)
운용수익	1,141,150,825.	571,752,576.	-8,361,287,166.
이자수익	5,369,613.	9,925,271.	3,434,12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135,781,212.	561,827,305.	-8,364,721,29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1,650,000.	-1,650,000.
당기순이익	1,141,150,825.	570,102,576.	-8,362,937,166.
매매회전율	65.71	123.43	147.67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2,714.13	42.90	0.1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42,714.13	42.90	0.10	0.00	0.00	0.0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333,567	20,622.42	554,224	22,146.67	33,702.95	65.71	31.85

주1)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18기(2024.02.17) 금 액		제17기(2023.08.17) 금 액		제16기(2022.08.17)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56,808,449.		359,681,315.		366,392,27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56,808,449.		359,681,315.		366,392,270.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34,590,779,957.		34,736,983,523.		37,494,851,906.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34,590,779,957.		34,736,983,523.		37,494,851,906.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29,561,692.		201,162,634.		155,231,91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9,064,800.		200,661,673.		154,917,873.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496,892.		500,961.		314,037.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34,977,150,098.		35,297,827,472.		38,016,476,086.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29,064,800.		54,029,047.		3,922,95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29,064,800.		52,379,047.		2,272,950.	
4. 수수료미지급금	0.		1,650,000.		1,650,000.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29,064,800.		54,029,047.		3,922,950.
자 본						
1. 원 본	40,396,584,173.		42,101,618,832.		46,154,714,67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9,557,522.		-768,502.		220,775,628.	
3. 이월잉여금	-5,438,941,353.		-6,857,051,905.		-8,362,937,166.	
(발행좌수 당기: 40,396,584,173 좌	이익잉여금	-5,438,941,353.		-6,857,051,905.		-8,362,937,166.
전기: 42,101,618,832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46,154,714,674 좌)						
(기준가격 당기: 0.00 원						
전기: 837.11 원						
전전기: 823.59 원)						
자 본 총 계		34,948,085,298.		35,243,798,425.		38,012,553,13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4,977,150,098.		35,297,827,472.		38,016,476,086.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8기(2023.08.18 ~ 2024.02.17) 금 액		제17기(2022.08.18 ~ 2023.08.17) 금 액		제16기(2021.08.18 ~ 2022.08.17)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5,369,613.		9,925,271.		3,434,126.
1. 이 자 수 익	5,369,613.		9,925,271.		3,434,126.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163,152,703.		709,957,404.		68,859,551.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163,152,703.		709,957,404.		68,859,551.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7,371,491.		148,130,099.		8,433,580,843.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27,371,491.		148,130,099.		8,433,580,843.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0.		1,650,000.		1,650,000.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0.		1,650,000.		1,650,000.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141,150,825.		570,102,576.		-8,362,937,16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28248696		0.013541108		-0.18119356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설정(발행)		회계기간 중 환매		기간말 잔고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421.02	352.44	11.61	9.67	28.66	24.04	403.97	349.48
2022.08.18 ~ 2023.08.17	461.55	380.13	26.80	21.62	67.33	55.01	421.02	352.44
2021.08.18 ~ 2022.08.17	388.90	388.90	270.94	268.03	198.29	193.17	461.55	380.1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종류형 펀드

Class 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설정(발행)		회계기간 중 환매		기간말 잔고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246.48	199.56	4.09	3.26	9.12	7.30	241.46	200.36
2022.08.18 ~ 2023.08.17	267.88	216.91	8.75	6.82	30.14	24.06	246.48	199.56
2021.08.18 ~ 2022.08.17	231.59	231.59	80.23	78.92	43.94	40.87	267.88	216.91

Class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설정(발행)		회계기간 중 환매		기간말 잔고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67.20	54.38	3.73	3.00	8.04	6.58	62.88	52.15
2022.08.18 ~ 2023.08.17	64.99	52.61	12.19	9.71	9.98	7.99	67.20	54.38
2021.08.18 ~ 2022.08.17	48.47	48.47	29.89	28.74	13.37	12.77	64.99	52.61

Class 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10	0.10	0.29	0.28	0.00	0.00	0.39	0.40
2022.08.18 ~ 2023.08.17	0.08	0.07	0.21	0.19	0.19	0.15	0.10	0.10
2021.08.18 ~ 2022.08.17	1.09	1.09	1.80	1.65	2.82	2.62	0.08	0.07

Class C3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2.10	1.69	0.17	0.13	1.89	1.52	0.38	0.31
2022.08.18 ~ 2023.08.17	0.01	0.01	2.69	2.04	0.60	0.51	2.10	1.69
2021.08.18 ~ 2022.08.17	0.06	0.06	0.05	0.05	0.10	0.07	0.01	0.01

Class C4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01	0.01	1.22	1.22	0.07	0.07	1.16	1.18
2022.08.18 ~ 2023.08.17	0.07	0.07	0.01	0.01	0.08	0.08	0.01	0.01
2021.08.18 ~ 2022.08.17	0.00	0.00	0.11	0.11	0.04	0.04	0.07	0.07

Class C5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111.87	90.50	0.82	0.65	6.57	5.31	106.13	87.97
2022.08.18 ~ 2023.08.17	126.65	102.51	2.41	1.91	17.19	13.66	111.87	90.50
2021.08.18 ~ 2022.08.17	108.64	108.64	35.23	34.89	17.22	16.02	126.65	102.51

Class 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3.08	2.52	0.10	0.08	0.04	0.03	3.14	2.64
2022.08.18 ~ 2023.08.17	2.99	2.43	0.09	0.08	0.00	0.00	3.08	2.52
2021.08.18 ~ 2022.08.17	2.08	2.08	0.91	0.90	0.00	0.00	2.99	2.43

Class 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50	0.41	0.02	0.02	0.01	0.01	0.52	0.44
2022.08.18 ~ 2023.08.17	0.45	0.37	0.05	0.04	0.00	0.00	0.50	0.41
2021.08.18 ~ 2022.08.17	0.37	0.37	0.32	0.31	0.24	0.23	0.45	0.37

Class Pe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1.33	1.09	1.20	0.98	0.27	0.22	2.26	1.90
2022.08.18 ~ 2023.08.17	1.15	0.93	0.44	0.35	0.26	0.21	1.33	1.09
2021.08.18 ~ 2022.08.17	0.96	0.96	0.55	0.51	0.36	0.33	1.15	0.93

Class Pe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06	0.05	0.02	0.01	0.00	0.00	0.07	0.06
2022.08.18 ~ 2023.08.17	0.14	0.12	0.05	0.04	0.14	0.10	0.06	0.05
2021.08.18 ~ 2022.08.17	0.01	0.01	0.13	0.12	0.00	0.00	0.14	0.12

Class S(P)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24	0.19	0.01	0.01	0.01	0.01	0.24	0.20
2022.08.18 ~ 2023.08.17	0.31	0.25	0.02	0.02	0.09	0.07	0.24	0.19
2021.08.18 ~ 2022.08.17	0.24	0.24	0.10	0.10	0.04	0.03	0.31	0.25

Class S(P)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28	0.23	0.02	0.02	0.02	0.02	0.28	0.23
2022.08.18 ~ 2023.08.17	0.27	0.22	0.07	0.05	0.06	0.05	0.28	0.23
2021.08.18 ~ 2022.08.17	0.12	0.12	0.21	0.19	0.05	0.04	0.27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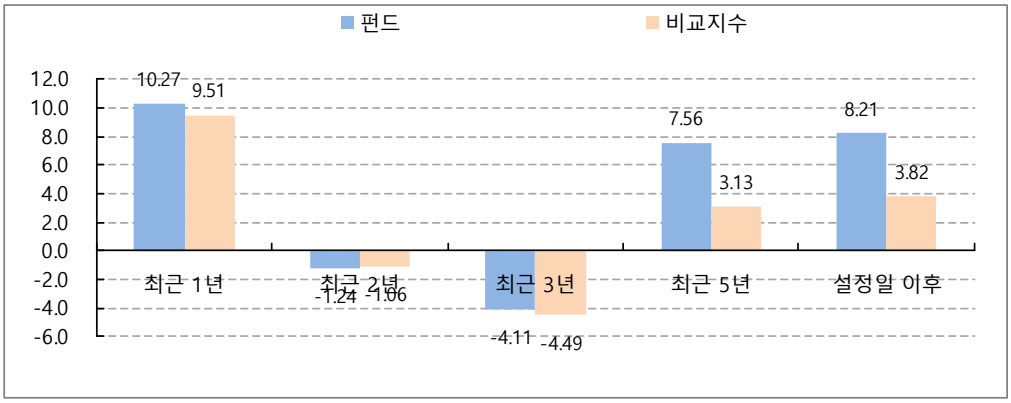
Class P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18 ~ 2024.02.17	0.25	0.20	0.01	0.00	0.00	0.00	0.25	0.21
2022.08.18 ~ 2023.08.17	0.37	0.30	0.18	0.13	0.30	0.23	0.25	0.20
2021.08.18 ~ 2022.08.17	0.29	0.29	0.08	0.08	0.00	0.00	0.37	0.3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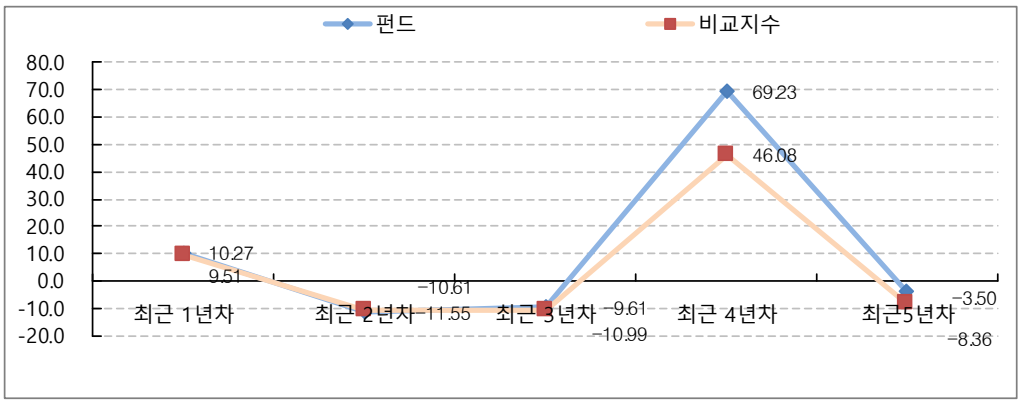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3.01~ 2024.02.29	2022.03.01~ 2024.02.29	2021.03.01~ 2024.02.29	2019.03.01~ 2024.02.29	2006.08.18~ 2024.02.29
펀드	2006.08.18	10.27	-1.24	-4.11	7.56	8.21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3.82
Class A	2006.08.18	8.44	-2.87	-5.70	5.81	6.28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3.82
Class Ae	2020.11.27	8.97	-2.40	-5.25		-0.06
비교지수		9.51	-1.06	-4.49		-0.40
Class C1	2006.08.18					5.39
비교지수						7.29
Class C3	2010.10.18	8.13	-3.14	-5.98	5.51	2.45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2.33
Class C4	2022.07.20	8.27				5.88
비교지수		9.51				6.93
Class C5	2010.10.18	8.40	-2.90	-5.74	5.77	2.70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2.33
Class C(E)	2007.12.14	8.42	-2.88	-5.72	5.78	3.20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2.00
Class S	2014.04.22	9.11	-2.27	-5.12	6.45	4.33
비교지수		9.51	-1.06	-4.49	3.13	2.55
Class P1	2020.12.11	8.68	-2.66	-5.50		-1.72
비교지수		9.51	-1.06	-4.49		-1.65
Class Pe1	2020.12.07	9.06	-2.32	-5.17		-1.21
비교지수		9.51	-1.06	-4.49		-1.50
Class Pe2	2020.11.27	9.00	-2.37	-5.22		-0.03
비교지수		9.51	-1.06	-4.49		-0.40
Class S(P)1	2020.08.27	9.23	-2.16	-5.02		2.99
비교지수		9.51	-1.06	-4.49		2.30
Class S(P)2	2020.08.25	9.22	-2.17	-5.03		3.56
비교지수		9.51	-1.06	-4.49		2.74
수익률 변동성		14.46	17.07	16.68	20.67	18.89

주1) 비교지수: KOSPI Inde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인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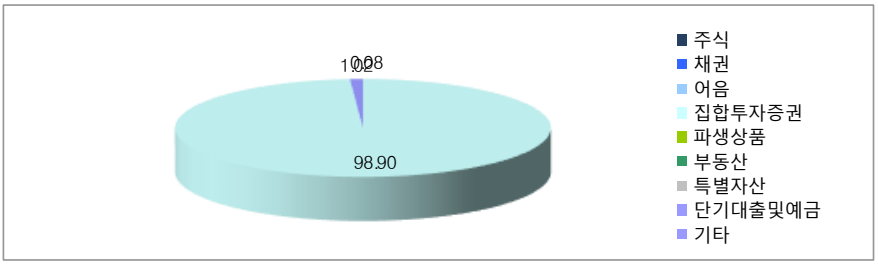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3.03.01~ 2024.02.29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2.02.28	2020.03.01~ 2021.02.28	2019.03.01~ 2020.02.29
펀드	2006.08.18	10.27	-11.55	-9.61	69.23	-3.50
비교지수		9.51	-10.61	-10.99	46.08	-8.36
Class A	2006.08.18	8.44	-13.00	-11.13	66.65	-5.10
비교지수		9.51	-10.61	-10.99	46.08	-8.36
Class Ae	2020.11.27	8.97	-12.58	-10.69		
비교지수		9.51	-10.61	-10.99		
Class C1	2006.08.18	4.56				
비교지수		6.16				
Class C3	2010.10.18	8.13	-13.24	-11.40	66.21	-5.37
비교지수		9.51	-10.61	-10.99	46.08	-8.36
Class C4	2022.07.20	8.27	1.30			
비교지수		9.51	1.77			
Class C5	2010.10.18	8.40	-13.03	-11.17	66.59	-5.14
비교지수		9.51	-10.61	-10.99	46.08	-8.36
Class C(E)	2007.12.14	8.42	-13.01	-11.15	66.61	-5.12
비교지수		9.51	-10.61	-10.99	46.08	-8.36
Class S	2014.04.22	9.11	-12.47	-10.57	67.59	-4.50
비교지수		9.51	-10.61	-10.99	46.08	-8.36
Class P1	2020.12.11	8.68	-12.81	-10.94		
비교지수		9.51	-10.61	-10.99		
Class Pe1	2020.12.07	9.06	-12.51	-10.62		
비교지수		9.51	-10.61	-10.99		
Class Pe2	2020.11.27	9.00	-12.55	-10.66		
비교지수		9.51	-10.61	-10.99		
Class S(P)1	2020.08.27	9.23	-12.37	-10.47	29.43	
비교지수		9.51	-10.61	-10.99	24.30	
Class S(P)2	2020.08.25	9.22	-12.38	-10.48	32.02	
비교지수		9.51	-10.61	-10.99	26.19	

주1) 비교지수: KOSPI Inde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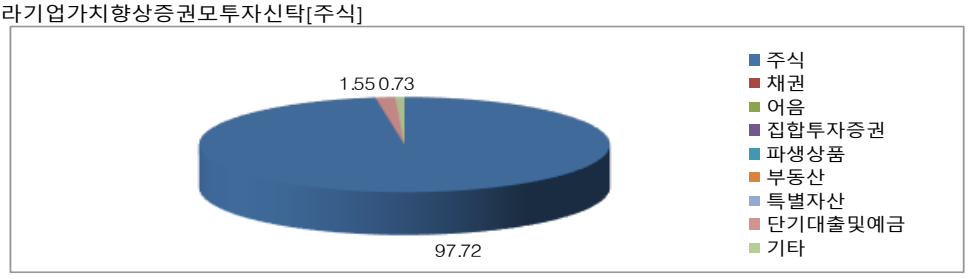
[2024.02.1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345.9	0.0	0.0	0.0	0.0	0.0	3.6	0.3	349.8
	(0.00)	(0.00)	(0.00)	(98.90)	(0.00)	(0.00)	(0.00)	(0.00)	(0.00)	(1.02)	(0.08)	(100.00)
KRW	0.0	0.0	0.0	345.9	0.0	0.0	0.0	0.0	0.0	3.6	0.3	349.8
	(0.00)	(0.00)	(0.00)	(98.90)	(0.00)	(0.00)	(0.00)	(0.00)	(0.00)	(1.02)	(0.08)	(100.00)

주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02.1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341.9	0.0	0.0	0.0	0.0	0.0	0.0	0.0	0.0	5.4	2.5	349.9
	(97.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5)	(0.73)	(100.00)
KRW	341.9	0.0	0.0	0.0	0.0	0.0	0.0	0.0	0.0	5.4	2.5	349.9
	(97.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5)	(0.73)	(100.00)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ESG투자전략 이행현황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이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ESG평가등급에 따라 편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SG등급	23.12.28
A+	14%
A	56%
B+	6%
B	5%
C+	0%
C	5%
D+	0%
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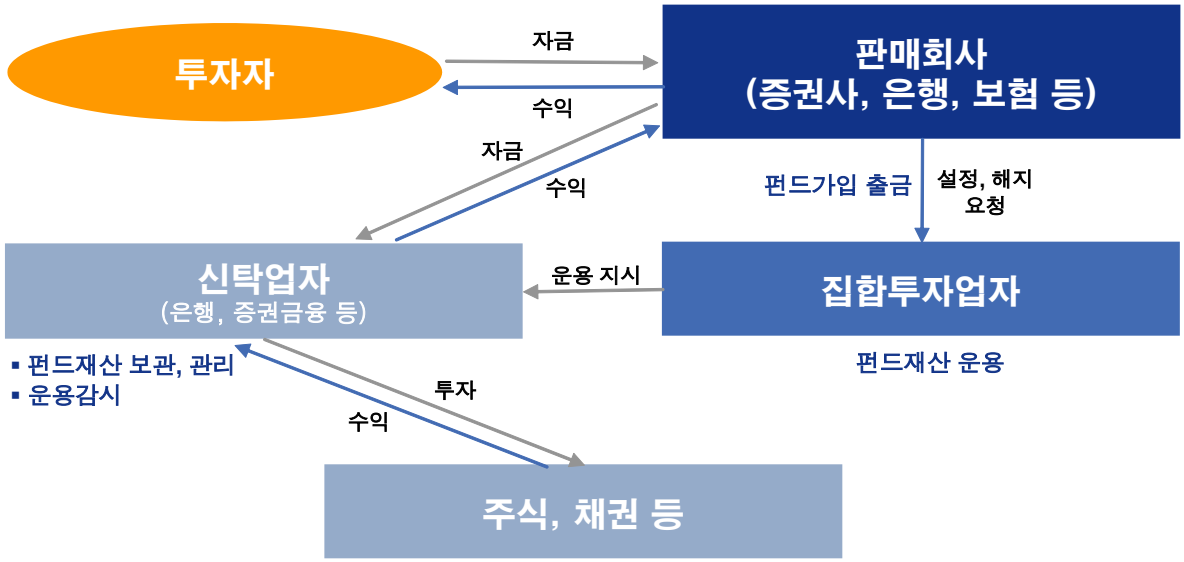
현재 피투자기업 대상 중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1사(ISC)이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ESG 컨트로버셜 이슈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주활동 내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주활동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wooriam.kr)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 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 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 1.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자본금	23,985,770,000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기준가격계산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2.12.31**	**21.12.31**	**항목**	**22.12.31**	**21.12.31**
유동 자산	398.9	430.4	영업수익	275.9	260.1
고정 자산	904.3	853.1	영업비용	213.7	175.1
자산 총계	**1,303.2**	**1,283.5**	**영업이익**	**62.2**	**85.0**

유동 부채	77.3	68.1	영업외수익	0.9	20.4
고정 부채	-	-	영업외비용	48.7	1.2
부채 총계	**77.3**	**68.1**	세전순이익	14.4	104.2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4.6	20.9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898.5	888.7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6.3	5.6			
자본총계	**1,225.9**	**1,215.4**	**당기순이익**	**9.8**	**83.3**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2.29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179	85,821	1,733	7,639	4,279	17,304	19,086	1,044	169,496	314,58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6 TEL) 02-1588-9999 www.kbstar.com
회사연혁등	2001.11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국민은행으로 명칭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⑩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

(2)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회사연혁등	2000.08. ㈜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CS자산운용㈜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③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 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28 한국화재보험협회 4 층 ☎ 02-3215-1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대하빌딩 4 층 ☎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 층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설립일: 2000. 5. 29 -등록일: 2000. 7. 1 -자본금: 50 억원 (www.koreaap.com)	-설립일: 2000. 6. 20 -등록일: 2000. 6. 30 -자본금: 30 억원 (www.bond.co.kr)	-설립일: 2000. 6. 15 -등록일: 2000. 6. 15 -자본금: 47.5 억원 (www.npricing.co.kr)	-설립립: 2011. 6. 9 -등록일: 2011. 9. 23 -자본금: 50 억원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7.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개요

회사명	한국 ESG 기준원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 층** **(연락처: 02-3775-3339)**

회사연혁	2022. 코스닥 지배구조 평가 확대 2021. ESG 모범규준 개정 2018. 감사위원회 및 감사 모범규준 공표 2016.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2012. 의안 분석 서비스 실시 2011. ESG 통합등급 공표 2010. 사회 모범규준환경 모범 규준 제정 2009. 한국거래소(KRX)와 SRI (사회책임투자) 지수 개발 2002.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설립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gs.or.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000개 이상의 국내 기업에 대한 ESG 관련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당사 ESG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하여 국내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비교가능한 형태로 정량화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ESG평가회사의 의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자의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 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④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 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 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 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평가항목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및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선정방법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 및 매매체결업무에 대해 최소 매 분기마다 평가하며,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각 중개회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운용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매담당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약정을 배분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중도환매를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해외 통화로 주식 등을 사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